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초과 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부여 등〉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66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요	1
II. 주요내용별 검토	2
1.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초과 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부여 등 ..	2
2.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 도입	17

I. 개요

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0.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초과 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부여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비율이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식품등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 2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함)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도록 하며(안 제12조의5),

이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u>유전자변형식품등</u> 에 한정한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 ----- ----- ----- ----- ----- ----- ----- ----- ----- <u>-- 유전자변형식품등의 비율이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식품등</u> ----
1. · 2. (생략) ② ·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2조의5(식품접객업소의 유전자 변형농수축산물 사용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현행	개정안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삭제 <u><신설></u> 1의3. (생략) 2.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u>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3.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u>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u>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생략) <u>1의2.</u> ~ <u>1의5.</u> (생략) 2. ~ 6. (생략) ④·⑤ (생략)	----- -----. <u>1.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u>1의3.</u> ~ <u>1의6.</u> (현행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5까지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2.~3. (생략)

□ 동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i) 「식품 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i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iii)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1)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iv)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2)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 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함)을 말하며,

제3조에서는 표시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18조3)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었는데, 혼입치4)가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농산물의 제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율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음.⁵⁾

< 현행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제도 개요⁶⁾ >

구분	내용
유전자변형 식품 개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GMO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승인품목(6종)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표시면제 또는 예외	① GMO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된 경우(비의도적 혼입치 ³⁾ 3% 이하까지는 관련 서류 구비 시 GMO 표시 면제 * 농산물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 (대만 3% 이하, 일본 5% 이하, 호주 1% 이하, EU 0.9%이하)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GMO 유전자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과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지류, 당류 등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이처럼 고시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조·가공 후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비율이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지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27.)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제조·가공 후에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내용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7. “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생산·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둘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고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혼입치를 3%에서 0.9%로 강화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조·가공 후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비율이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식품등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 0.9% 기준이 원재료인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조·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식품등’이란 현행법 제3조제3항7)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식품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인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셋째,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하고 경제

7)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적·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넷째, 안 제12조의5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리한 식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사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중 어느 업종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GMO 표시 기준 강화는 수입 원재료의 가격 상승 및 안정적 공급 우려, 완제품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국내외 사회적·산업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지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강화하려는 것이나,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면 자구 수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식품접객업소 GMO 사용표시) 현재 수입되는 GMO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이 대부분 식품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점, 식품접객업소의 영세성과 GMO 표시면제 증빙자료 구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상 다른 업종(식품제조·가공업 등)의 GMO 표시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등)을 하고 있어 업종별 처분에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비의도적 혼입치의 구체적 수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하여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식품접객업소 GMO 사용표시) 표시 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3) 한국식품산업협회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비의도적 혼입치는 원료단계에서만 관리 확인이 가능하며, 제조·가공 후 정량분석을 통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실질적 관리 검증은 어려운 데 비해 행정적 규제만 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음.

(식품접객업소 GMO 사용표시) 소상공인의 원재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종 제품의 가격 인상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내수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 있어 삭제 의견

4) 한국대두가공협회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강화 시, 수출국은 구분 유통과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요구하여, Non-GMO 가격은 현재보다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는 국내 수급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짐.

5) 한국전분당협회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비의도적 혼입치 0.9%의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는 없으며, 물가 폭등은 불가피함. 또한 완제품 수입 생산지의 관리체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을 때 국내 산업 역차별이 우려됨.

6) 한국장류협동조합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설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완전 분리하여 생산, 수입, 유통해야 하므로 원료 및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수입단계의 원료 정량검사에 대한 관리 비용이 부과되어, 자칫 모든 식품에 GMO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유지 의견임.

7) 한국외식산업협회

(식품접객업소 GMO 사용표시) 식품접객업소의 영세성, 메뉴 다양성 및 원재료 정보 확인·표시에 인력, 비용 등 소요, 중소 외식업체 및 자영업자 등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임.

8)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강화할 경우 Non-GMO 콩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GMO 표시 관련하여서는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및 관리의 어려움 등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게 GMO 식품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과 식품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위해성 여부 등 과학적 근거와 관리대책 마련 후 시행 필요

(식품접객업소 GMO 사용표시)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GMO 표시 의무 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Non-GMO 표시 요구도 할 수 있으며, 현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영세하고 소상공인인 식품접객업소에 과도한 의무 부여임.

2.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함)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6(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5조⁸⁾에서는 유전

8)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제3조제1항9)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10)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됨.

-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대두를 원재료 함량의 50% 이상 사용하거나 원재료 함량 중 대두가 가장 많이 사용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음. 다만,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두가 1%라도 포함된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없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0.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 즉,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GMO가 0%일 때만 가능하며, 표시 대상이 아닌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게 됨.
- 이에 개정안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27.)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내용 발췌 〉

-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지 여부는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3) 한국식품산업협회

Non-GMO 표시는 소비자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Non-GMO 표시가 없는 제품을 GMO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Non-GMO 표시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등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 있어 삭제 필요

4) 한국장류협동조합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수입 완제품에 대한 국내식품의 역차별 이슈, 소비자 혼란 가중, 현실적인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Non-GMO 표시 삭제 필요

5) 한국외식산업협회

Non-GMO 표시 삭제 필요

문 의 처

02)6788-5493
